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3 - 12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이사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미등기 임원 포함)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③ 기타 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이사 후보 요건)

① 사내이사 후보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 및 전문 역량,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법령 위반 여부, 회사와의 이해 충돌 행위, 내부자 거래 행위 등의 기업 가치
훼손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

1.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의 전문 분야,
경력, 관련 경험, 전문 지식 등의 자질 수준과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자를 후보로 한다.
2. 사외이사 후보에게 회사의 거래 확인 여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타 기업 겸직은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1개에 한하여 가능하다.
3.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는 기존 사외이사 직무수행간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4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